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9. 12 선고 2018가단1032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9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18. 1. 1.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유효영

별지